

II. EU의 환경 관련 무역장벽

우리의 대EU 수출은 금년 3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한 41억2천만달러를 기록, 작년 4월 이후 금년 3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가세가 우리의 국내적 요인과 EU의 각종 숨은 무역장벽 및 견제 움직임에 부딪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EU의 표준, 시험, 라벨링, 인증제도 등에는 곳곳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업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대EU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숨은 무역장벽을 파악, 제거를 통해 확트인 수출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중 EU편을 기초로 우리의 대EU 진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숨은 무역장벽을 자세히 분석해 본다. (무역과 환경 관련사항만 발췌하여 수록)

1. 표준, 시험, 라벨링 및 인증

EU회원국들은 아직도 일정품목에 대해서는 개별국가별로 다른 표준, 시험, 인증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각 국가마다 인증절차가 다른 것은 EU내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인증테스트와 증명서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시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정제품군의 기술통합과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New Approach)¹⁾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EU에는 법률, 규정, 표준, 시험, 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많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U의 표준화과정은 아직까지 미국회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이 방식은 각 제품의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ments)만을 EU지침으로 정하고 전기분야에서는 CENELEC(유럽 전기기술위원회), 비전기분야에서는 CEN(유럽 표준화위원회), 그리고 정보통신분야는 ETSI(유럽 전기통신 표준연구소)에 표준제정을 위임해 각 제품이 이러한 표준에 적합하면 지침상의 필수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제도임

o 표준화

범대서양 비즈니스 회담(TABD :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이 범대서양 시장 어디서든지 일단 인정받은 것은 승인해 주는 것을 목표로 채택한 것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EU간 무역관계에서 표준화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상무성은 EU법에 따라야 하는 규제품목이 미국의 대EU 수출품의 50%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품목의 교역량이 방대하므로 규제지역인 EU에서 EU의 표준화 관련 법제정과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EU에는 환경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미국 수출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EU표준화의 개발 지연, 규제품목군에 대한 통일된 입법안 지연, 동일한 입법에 대해 회원국들의 일관적이지 못한 해석과 실행, 특정제품군에 지침의 중복, 다양한 지침범위의 회색지대,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규제품목에 대한 불명확한 마킹과 라벨링 조건 등이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무역장벽은 아니지만 미국 수출업자들이 EU시장에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o 상호인정협정

EU가 강제검사품목을 테스트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지정한 EU국립시험소는 통일된 방법에 따라 테스트와 인증서 발급을 수행하고 있다. EU는 임의검사 품목군에 대한 테스트 및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는 민간기관들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수출업자들의 어려움은 강제검사품목에 대한 최종승인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정기관'(Notified Body)이 단지 유럽에만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소재 시험소는 지정기관과 하청계약에 따라 강제검사품목에 대해 테스트만 할 수 있으며 최종 인증서 발급은 유럽소재 지정기관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청계약에 의한 시험절차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과도한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과 과다비용을 발생시켜 대EU시장 접근기회를 주지 않는다. 즉, 미국소재 시험소는 최종 제품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최종승인을 받기 위해 시험보고서를 EU소재 지정기관에 보내야 함에 따라 인증 발급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되는 부담이 있다. 미국과 EU는 여러개의 중요한 부문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했다. MRA 체결은 EU의 규제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업체가 미국내에서 미국시험소를 통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가되며 그 반대도 허가되는 것이다. 일단 현재는 미국과 EU간 MRA에 서명한 상태이며, 올해 중반경부터 MRA를 실행하게 될 예정이다.

o 제품승인

EU는 96~97년에 유전자 변형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입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EU회원국들에서 소비자의 반대에 따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은 불투명하다. 지침 90/220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공학제품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현대 생명공학제품의 승인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지침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몇 년이 지나서야 이 제품의 승인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생명공학제품의 승인 관련 문제는 EU집행위와 의회에 토론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97~98 곡물년도 기간에 재배된 4종류와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수입이 검토되고 있다. EU는 특별한 설명 없이 수입승인을 지체하고 있으며, 과학적이라고 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가절차나 재심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농산물과 같은 생명공학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제품 수입승인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려는 EU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생명공학제품 수입승인과정은 너무나 정치적이며 특히, 이미 미국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거친 결론에 대해 새롭게 추가적인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공평치 못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제품이 캐나다, 일본, 미국에서 승인을 얻는데 평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 EU에서는 2년 이상이 걸렸다. EU에서 생명공학 제품이 수입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대의 생명공학제품의 EU시장 진입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유전자변형제품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는 EU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o 라벨링

작년 5월 지침 90/220에 추가해 EU는 소위 '신개량 식품 및 원료에 대한 규정 (Novel Food Regulation, 규정 258/97(L43, 97.2.14))'을 채택해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라벨링을 의무화해 라벨링을 한 유전자 변형식품(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경우에만 EU내에서 판매를 허용했다. 같은 해 7월에 EU집행위는 유전자 변형제품에 대해 새로운 EU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유전자 변형제품, 동물사료, 종자 등에 대해 라벨링 부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유전자변형제품이 아닌 제품의 인증에는 자발적으로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지만 유전자변형제품에는 누가 인증서를 발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해 9월에 새로운 EU법은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유전자변형 콩에 대해서 식품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 법은 2개월 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으나 라벨링 기준과 라벨링 표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에 집행위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나 콩에서 나오는 감지가 가능할 정도의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라벨링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회원국들로부터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궁극적으로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 라벨링 기준은 향후 유전자변형제품의 라벨링에 토대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생산과정에 라벨링할 필요는 없다. 즉 기업들이 단순히 생명공학을 통해서 생산됐기 때문에 제품을 라벨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국은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로 라벨링을 요구한다. 과거 몇 년에

결쳐서 미국은 라벨링 부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관리들은 유전공학제품을 포함해 위험에 관계없이 모든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해 라벨링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o 특정위험물질(SRMs) 사용금지

97년 7월30일에 EU는 식품, 동물사료, 의료, 의약, 화장품 및 기타 산업제품에 특정 위험물질(SRMs : Specified Risk Materials) 사용의 금지를 채택했다. EU는 일반적으로 광우병으로 유명한 BSE, 해면상뇌질환 물질의 EU 유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었던 금지조치가 98년 4월 1일로 연기됐다. 특정위험물질은 뇌, 눈, 편도선, 12개월 이상된 소, 양, 염소의 척수로 정의될 수 있으며 양과 염소의 비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 사용금지조치는 육류 생산시 소, 양, 염소의 등뼈(척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피동물의 양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금지조치로 인해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감소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직접적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SRMs 금지조치는 WTO의 위생검역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다. 금지조치는 불필요하게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BSE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미국이나 무역상대국의 제품들이 현재 이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EU는 현재 특정위험물질 금지조치를 조정하고 있으며 무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화장품 생산시 특정위험물질로 가공된 수지과생물(Tallow Derivatives)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약품분야에 있어서도 효력을 위해 SRMs를 필요로 하는 생명공학제품, 의료기기, 젤라틴, 수지과생물(Tallow Derivatives)을 의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식품과 사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SRMs를 함유하고 있는 산업용 제품의 허가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EU관리들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특정위험물질 금지조치를 통해서 BSE의 침투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o 육류생산에 성장호르몬 사용금지

거의 10년 동안 EU는 성장호르몬을 사용해 생산된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은 96년 5월에 EU의 성장호르몬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WTO 항소기구는 EU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2)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EU는 WTO의 SPS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래의 WTO 판결을 지지했다. EU는 건강상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호르몬을 사용해 생산된 소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

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도 없이 수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패널의 판결을 항소기구는 재확인했다. EU는 가까운 시일 내에 WTO 분쟁해결 결과에 순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SPS조치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함

○ 자발적인 에코라벨링 프로그램

92년 3월 23일에 EU 각료회의는 EU의 에코라벨링제도를 승인했다. 에코라벨링제도는 특정제품의 생산과 라이프사이클이 특정기준에 부합할 때 제조업자가 생산품에 대해 에코라벨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환경을 생각하고 제품을 구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11개의 제품에 대해서 EU의 에코라벨 기준이 채택, 시행되고 있다. 11개 품목은 세탁기, 식기 세척기, 토양개선제, 화장지, 세탁기용 세제, 전구(전구 1개와 전구 2개), 페인트 및 니스, 칩구류, T셔츠, 복사지, 냉장고 등이다. 집행위는 재생종이를 가공한 제품, 모직물 및 합성직물, 컴퓨터, 신발에 대해서도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EU와 미국 이익집단간의 지속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96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기술적으로 양측의 대화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 EU대표부는 98년에 이 주제와 관련해 미국과 회의를 개최할 것을 공약한 상태이다. 미국이 회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EU의 에코라벨링제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포장재 라벨링 요건

96년에 집행위는 EU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재생과 재활용을 표시해 주는 표기법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 지침에 대해 2가지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는 EU의 포장재 표기법은 미국이나 ISO에서 개발된 포장재 표기법들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환경에 이익을 주는 것도 없이 마케팅과 유통만 복잡해져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미국과 EU기업들 모두에게 초과비용만 부담시키고 있다고 포장재 라벨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두 번째 우려는 재사용과 재활용 포장재를 표시해 주는 EU 역외국의 마크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 제4조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요건들은 유리나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히 EU시장에서만 사용되는 새로운 마크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EU집행위는 궁극적으로 ISO협정에 비추어 EU마크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ISO에서 진행중인

논의가 해결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작년 말에 집행위의 제안을 심사하고 집행위가 ISO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집행위의 포장재표기법 지침에 대해 몇몇 코멘트를 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입법과정의 집행 때처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o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감축 강화

EU집행위는 2000년이나 2001년에 HCFCs(hydrochlorofluorocarbons)의 축소에 관한 EU규정 3093/94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CFC의 대체물질인 HCFCs는 CFC보다 오존층을 덜 파괴한다. 미국은 EU와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층권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합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현재 EU가 제안한 수정안이 실행된다면 미국산 냉장고와 에어컨의 대EU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집행위측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규정 3093/94 수정안에 반영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EU와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모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국들이며 EU는 미국과 함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 :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협정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 더 높은 지적재산권(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기준을 실행하도록 개도국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EU의 몇몇 회원국들이 WTO의 TRIP협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나 슈퍼 301조를 통해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o 특허권

EU와 회원국들에서 특허권을 받는 것과 유지하는 비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즉, 특허발급비용, 유지비용이 미국에서의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나 유럽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은 97년 7월부터 특허권 발급비용을 20% 삭감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국립특허는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이 인정하고 있는 유럽특허와 양립하고(갈등할 수도 있음) 있다. 97년에 유럽집행위는 역내시장 총국(DG : Directorates General)이 제안한 보고서를 인정했다. 이 보고서는 75년에 회원국이 결정한 공동체 특허협정을 단일특허권 사용이라는 토대 위에 공동체 법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 보고서를 산업가, 발명가, 특허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상담할 때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중 유럽의회는

이 보고서에 관한 공식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집행위가 올해 안에 공동체의 특허시스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할지 의심스럽다.

o 생명공학제품 특허

97년에 EU는 9년간의 논의 후에 생명공학 특허법 협상에 많은 진전을 보였다. 현재 제안된 지침은 생명공학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관련 EU회원국들의 규정을 조화시키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 발명품의 특허권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물학적 물질(발견품이 아니거나 이미 존재하는 물체의 발견이 아닌)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품종, 동물종 및 본질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을 얻기 위한 생물학적 과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지침은 공공정책이나 도덕성과는 반대가 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발명품들과 인간복제와 유전학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배종(胚種)을 수정하는 과정 등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지침은 올해 중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국들은 2년 내에 지침에 따라 개별국가법을 조화해야 할 것이다.

손태청 (환경경영개선팀, 수석연구원)

